

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이효진 의원)

☐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.

☐ 미래한강본부 소관 사안으로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3675호,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
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
보고드리겠습니다.

☐ 본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
조례」의 취지에 따라,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
임산부를 포함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고
저출생 극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☐ 이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,
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
제14조 제2항에 제19호를 신설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
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.

☐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